

공인과 사인의 차이

2001년 1월호부터 '법률 속 언론, 언론 속 법률'의 필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김재협 판사로 바뀝니다. 그동안 13회에 걸쳐 이 연재물을 집필하면서 법 지식에 목말라 하는 언론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신 박형상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우리 옛말에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격언이 있고, 필자가 판사로 임명받음에 있어서도 일거일동이 세인의 주의 대상인 만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처신을 하라는 충고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유명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유명 기업인, 작가, 학자, 예술인, 대기자, 전국적 앵커맨, 시민운동가, 종교인, 복지사업가는 물론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우상이자 꿈인 스타들, 유명 탤런트나 배우, 유명 가수, 유명 체육인 등을 공인(public figures)이라고 부른다. 이들과 대비하여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자를 사인(private persons)이라고 부른다.

'벽에 해파리를 못질하는 것'

원래 공인 이론(theory of public figures)은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것으로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지금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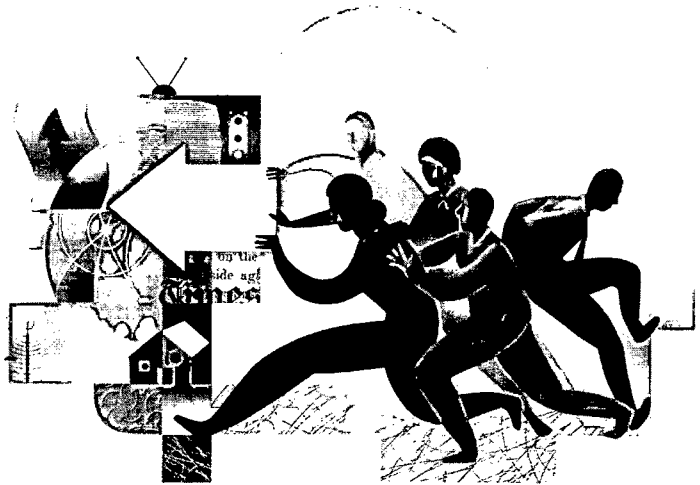
한다. 미국에서는 공인을 그 지위의 중요성이나 업적 등으로 공인으로 취급되는 자인 '전면적 공적 인물'과 특정한 공적 관심사에 자발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여 언론의 표적이 된 자인 '제한된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여파로 공인 이론은 언론 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론이 되었다.

1976년 플레이보이잡지사건(Rosanova v. Playboy Enterprise)에서 공적인물을 정의하는 것은 벽에 해파리를 못질하려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표시한 바 있다. 공적 인물의 개념 정의와 범위 한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다양한 하부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즉 제한된 공적 인물에는 주로 자발적인 공인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발적인 공인을 인정할 것이냐가 다투어지다가 제한적이거나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중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논쟁에서 중심적 역할이나 중대한 역할을 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논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발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공적 인물

김재협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공적 인물로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경제사범, 정치적 실세 브로커, 대통령을 살해하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명 높은 전력으로 공적 인물로 떠오르게 되는데(libel proof doctrine) 이들을 특별히 사악한 공인(notorious public figures)으로 칭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모두 공적 인물로 될 수는 없다. 사소한 범죄가 세간의 공적 관심사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일로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범위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다소 제한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하여 무능력하다고 고발당한 공립학교 선생은 미디어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이 있을 뿐이고, 학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하다(1953. Richmond Newspaper v. Lipscomb 판결). 따라서 대학 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마찰이나 법적 다툼, 형사적 분쟁 관계 등을 일으켰다고 하여 바로 제한적이나마 공적 인물의 공적 관



심사로 된 양 언론에 보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인도 보호할 사생활 있다

사인과 공인을 구별하여 언론인의 책임을 제한 내지 경감시키려는 의도는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을 촉진하는 신문과 방송의 순기능적 역할을 위하여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의 공적 사항의 선정이나 보도에 있어서도 이에 걸맞게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여 객관적으로 보도나 논쟁의 가치가 있는 사항에 한정해 심층적으로 할 것이지 알팍한 상술이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저질스런 황색 언론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최근에 매스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공적 인물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판매고나 청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사생

활에 관한 사항을 마구잡이식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비밀스런 부분은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때도 있다.

공적 인물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 생활 영역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어렵고 그 유일한 잣대도 찾기 어렵다. 개인 생활의 어느 면을 보면 그 사람의 공적 직위에 대한 능력과 적합성을 기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혼 과정이나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력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부분은 비록 사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보도나 비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순수히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 보내는 장면이나 가족간의 생활, 부부관계 등은 공적 활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인 임무를 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해외에 나가 선진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부 등의 대표나 특사의 자격으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자의 행동 등은 그 활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사적 비용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그 방문이나 활동 과정, 그 과정에서의 행태 등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보도가 가능하다.

연예부 기자들에게 물어보자. 한창 주가가 뜨는 유명 배우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가를. 프랑스에서는 이런 공개가 사생활침해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유명 연예인에 관한 것은 아니나 방송사가 실리콘백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원은폐의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여자의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피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비밀스런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여배우의 비판 정도나 자녀 관계, 병력 등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해사실 증언을 녹화방송시 신원을 알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도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기사 작성이나 방송시 주의와 자제가 요망되는 사항이다. 심지어는 여배우의 비판 정도나 자녀 관계, 병력 등 건강이나 의료상의 사항 등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할 수 없는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속한다.

사생활도 사생활 나름

다만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생활의 비밀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망사실을 알리기 위한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아무 사진이나 공개할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사망한 당시 주간

잡지사 파리마치지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사저 침대에서 사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였다가 초상권과 사생활 평온 침해라고 판단된 바 있다(파리지방법원 1997. 1. 13. Mittreand et autre c. Therond et Cogedipress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상징적인 손해배상액인 1프랑을 명한 것도 이해롭다). 문제된 사진을 직접 보지 않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사망 모습이 국민의 관심사이고 공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유족들로서는 공개하기가 꺼림칙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사회의 공기로서 미디어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볼 요소도 있으나,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 해도 관심을 갖게 된 인물에 관한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함에 있어서는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인의 공적 생활인지 사적 생활에 불과한지 한번쯤 짚어보면서 취재와 보도를 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민**